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 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심사지침 개정: 총 4항목 (제1장, 제2장, 제3장, 질병군\*)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용어정비 관련 협조 요청에 따른 질병군 1개 항목 포함(포괄수가기준부-2023.12.20.)

○ 제1장 기본진료료

개 정		
항 목	제 목	내 용
가10 격리실 입원료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격리실 입원료'와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적용하되,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만, 다음의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 음 - 가) 제1급감염병 - 탄저 : 치료기간 - 디프테리아 : 항생제 투여 종료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호흡기분비물이나 병변분비물 배양 검사가 음성일 때 나) 제2급감염병 - 결핵 : 객담 도말 검사상 3회 연속(수일간격) 음성으로 나타나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만, 10세미만 소아에서 객담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 정		
항 목	제 목	내 용
		<p>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증상, 방사선학적 이상소견, 결핵환자 접촉 등)에 따라 격리기간을 정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두 : 모든 수포에 가피가 앉을 때 다만, 가피가 생기지 않을 경우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 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수두 산모에게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생후 28일까지</li> <li>- 홍역 : 발진 후 5일</li> <li>- 콜레라 : 설사 증상 소실 후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li> <li>-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배양검사 음성일 때</li> <li>-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 배양검사가 음성일 때</li> <li>- A형간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달이 있는 경우: 황달발생 1주일이 경과하고, 발열 및 설사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황달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는 빌리루빈 상승 시점 기준)</li> <li>· 황달이 없는 경우: 최초증상 발생일로부터 14일간</li> </ul> </li> <li>- 백일해 : 항생제 투여 후 5일</li> <li>- 유행성 이하선염 : 종창 시작 후 9일</li> <li>- 풍진 : 발진 후 7일 다만, 선천성 풍진으로 입원시 1세까지, 선천성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시 3세까지</li> <li>- 폴리오 : 치료기간</li> <li>- 수막구균 감염증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li> <li>- 성홍열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li> <li>-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후 24시간까지</li> </ul> <p>다) 제4급감염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플루엔자 : 증상발현 후 5일</li> <li>-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 치료기간</li> </ul>

개 정		
항 목	제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관감염증 내 노로바이러스 : 치료기간</li> </ul> <p>라) 의료관련 감염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의한</li> </ul> <p>마)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C. difficile, 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종성 대상포진 : 치료기간</li> <li>- C. difficile 감염증 : 치료기간</li> <li>- 음 : 치료제 도포 후 24시간 다만, 가피성음의 경우 의사가 감염력이 소실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li> </ul> <p>※ 치료기간: 항생제 또는 항 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제투여기간을 의미하며, 대증치료를 하는 경우는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함.</p>

○ 제2장 검사료

개 정		
항 목	제 목	내 용
누370 성선자극 호르몬, 누371 성선호르몬- 정밀면역검사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에 2~3종 동시 시행한 호르몬검사의 인정기준	<p>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장애시 난소의 기능과 에스트로겐의 분비는 수년 동안 등락을 거듭하므로 한 시점에서 에스트로겐 측정으로 난소의 기능을 판정하기는 부정확하며, 폐경 이행기에 혈중 난소자극 호르몬(FSH)의 증가소견이 일정하게 나타나므로 폐경 진단에 유용한 검사는 누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사-난포자극호르몬 FSH 임.</p> <p>따라서, 일률적으로 호르몬검사를 2종(누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사-난포자극호르몬 FSH, 누371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에스트라디올 E2) 혹은 3종(누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사-난포자극호르몬 FSH, 누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사-황체형성호르몬 LH, 누371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p>

개 정		
항 목	제 목	내 용
		<p>에스트라디올 E2)을 산정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심사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가. 폐경 진단 시에는 난포자극호르몬 검사만 인정하고 조기 폐경인 경우 에스트라디올 검사를 추가 인정함.</p> <p>나. 첫 1회 검사로 진단이 확실치 않은 경우 1회 추가 인정하나, 일반적으로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이미 폐경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p> <p>다. 황체형성호르몬은 폐경의 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황체형성호르몬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p> <p>라. 폐경 진단 후 호르몬치료 중에 난포자극호르몬 검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p> <p>마. 안면홍조 등의 폐경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에스트로겐의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에스트라디올 검사는 사례별로 인정함.</p>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개 정		
항 목	제 목	내 용
다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PET	유방암에 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F-18 FDG-PET)의 적용기준	<p>1.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우 또는 선행검사<sup>1)</sup>에 따른 치료 전 병기판정 없이 시행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p> <p>2. 유방암 진단 후 선행검사를 통한 치료 전 병기설정<sup>2)</sup>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가. stage 0, I, II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stage IIb는 아래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p>

개 정		
항 목	제 목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1) 40세 이하 유방암 2) HER2(+) 3) 삼중음성 유방암</p> <p>나. stage III인 경우</p> <p>다. 원격전이가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인정하나, 확인(MI)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다발성 골전이가 있는 환자 중 고식적 화학요법 치료(palliative chemotherapy)를 계획하는 경우</p> <p>3. 치료 중 효과 판정 시는 아래와 같이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가. 선행검사에서 새로운 원격전이가 의심되거나 질병의 진행 여부가 불분명하여 시행한 경우</p> <p>나. 임상적 사유로 CT 혹은 MRI 촬영이 불가능하여 시행한 경우</p> <p>다. 다발성 골전이가 있는 경우 고식적 화학요법 치료(palliative chemotherapy) 중 반응평가로 시행한 경우</p> <p>4. 병기 재설정 시는 아래와 같이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가. 치료 후 완치 여부 판정<sup>3)</sup>을 위해 시행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하나, 타 영상검사서 잔여병소가 의심스러워 확인을 위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p> <p>나.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증후, 검사 결과<sup>4)</sup> 등이 있거나 재발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재발의 임상적 소견 없이 촬영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p>

개 정		
항 목	제 목	내 용
		*1) 선행검사 : CT, MRI, Bone scan 등 *2) 병기설정: 병기분류(stage)는 The 8th Edition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AJCC) Staging(I~IV) 적용. - TNM: Tumor(원발 종양), Lymph Node(림프절), Metastasis(원격전이). *3) 치료 후 완치여부 판정: 근치적치료 완료 후 즉, 수술 보조 항암화학요법, 보조면역요법, 방사선치료요법 모두 종결 시점을 말함. *4) 검사결과 : ① 세포 및 조직검사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 ② CT, MRI, Bone scan 등에서 재발소견이 의심되는 경우 ③ CT, MRI, Bone scan 등에서 재발소견은 없지만 혈액검사(CA15-3)상 2회 이상 증가 소견을 보이는 경우

○ 질병군

개 정	
제 목	내 용
질병군(DRG) 진단 분류기호 부여기준	아래 진단분류기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1. O14(임신중독증) 아래의 혈압과 단백뇨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아 래 - 가. 혈압: 정상혈압을 갖고 있던 여성에서 임신20주 이후에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상, 6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최소한 2번 이상 증명된 경우 나. 단백뇨: 6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이상(또는 100mg/dl 이상) 2번 이상 증명된 경우 또는 24시간 요중에 단백질이 300mg 이상 존재가 확인된 경우 2. O15(자간증) O14(임신중독증)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임신성 고혈압에 의해 경련(Convulsion)이 동반된 경우 3. O46(분만 전 출혈)

개 정	
제 목	내 용
	분만 전에(활발한 진통이 시작되기 전) 출혈이 있어 입원한 경우 또는 입원하여 분만 전에 출혈량에 관계없이 출혈이 있었던 경우 (혈성이슬 제외) ※ 응고장애를 동반한 경우 O460(응고장애를 동반한 분만 전 출혈) 부여 가능 4. O67(분만 중 출혈) 분만 중 (활발한 진통이 시작된 후부터 태아의 만출까지 : 분만 제1.2기)에 과다출혈이 있었던 경우로 분만전(입원당시)과 비교 Hct가 10%이상 감소한 경우이거나 수혈이 필요하여 수혈을 실시한 경우 ※ 응고장애를 동반한 경우에는 응고 장애를 동반한 분만 중 출혈(O670) 부여 가능 5. O72(분만 후 출혈) 분만 제3기부터 분만 후 6주 이내(조기산후출혈과 지연산후출혈을 모두 포함)에 과다 출혈이 있었던 경우로 분만전(입원당시)과 비교 Hct가 10%이상 감소한 경우이거나 수혈이 필요하여 수혈을 실시한 경우 ※ 응고장애를 동반한 경우에는 O723(분만 후 응고 결여) 부여 가능 6. D62(급성 출혈 후 빈혈) 외과적 수술, 처치 후 다량의 출혈로 수술전(입원당시)과 비교 Hgb과Hct 수치의 10% 이상 감소 및 Hb 10g/dl 미만으로 저하되어 이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약제투여, 수혈 등) 7. O47(가진통) 임신 만기 전에 자궁의 불규칙적인 수축으로 인한 통증으로 수축이 자연 소실되거나 자궁경관의 개대가 없는 상태로 분만으로 이어지지 않은 진통으로 확인된 경우 8. O85(산후기 패혈증) 분만 후 첫 24시간을 제외한 산후 10일 이내에 2일간 계속하여 38℃(100.4°F) 이상의 체온상승이 확인된 경우 9. Z355(고령 초임산부의 관리) 초임산부로서 35세 이상인 경우 10. Z356(어린 초임산부의 관리) 초임산부로서 16세 미만인 경우 11. Z358(기타 고위험 임신의 관리) 경산으로 40세 이상인 경우와 35세 이상인 경산으로 전 출산과

개 정	
제 목	내 용
	만 5년이상 Interval이 있는 경우
12. T814(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에 의한 감염)	수술부위의 통증, 국소 종창, 발적, 열감 등의 감염 징후를 동반하면서 - 표재성 창상, 심부 절개 부위 및 기관/강 등 외과수술 부위에서 농성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 무균 처치시 획득된 체액이나 조직에서 미생물의 배양이 확인된 경우 - 무균 처치시 획득된 체액이나 조직에서 미생물이 분리된 경우 등으로 외과의사나 주치의사의 판단에 의해 감염으로 진단한 경우
13. E10(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당뇨병이 불안정형(brittle), 연소성 발병형(juvenile-onset), 케토증경향(ketosis-prone) 또는 I 형(type I)인 경우
14. O141(중증의 전자간)	- 전자간증이면서 다음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가 침상 안정 상태에서 적어도 6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수축기 혈압 160mmHg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 110mmHg 이상</li> <li>• 24시간 채뇨 소변에서 5gm이상의 단백뇨 또는 적어도 4시간 간격으로 2회 채뇨 점적뇨에서 3+이상</li> <li>• 24시간 500ml 이하의 뇨뇨</li> <li>• 대뇌 장애 또는 시력 장애</li> <li>• 폐부종 또는 청색증</li> <li>• 상복부 또는 우상복부통증</li> <li>• 간기능 장애</li> <li>• 혈소판 감소증</li> <li>• 태아발육지연</li> </ul>
15. O142(헬프(HELLP) 증후군)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혈(hemolysis) Abnormal peripheral blood smear Increased bilirubin <math>\geq 1.2\text{mg/dl}</math> Increased LDH <math>&gt; 600\text{ IU/L}</math></li> <li>• 간효소치 상승</li> </ul>

개 정	
제 목	내 용
	Increased AST $\geq 72\text{ IU/L}$ Increased LDH as above • 저혈소판혈증 Platelet count $< 100 \times 10^3 / \mu\text{l}$
16. O13(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성)고혈압)	정상혈압을 갖고 있던 여성에서 임신20주 이후에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상, 6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최소한 2번 이상 증명되고 분만 후까지 단백뇨가 동반되지 않고 고혈압으로 남아 있는 경우

## 심사지침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b>제1장 기본입원료</b>			<b>제1장 기본입원료</b>			
가10 격리실 입원료	격리입원 실 질환유형 별 격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li> <li>- ‘격리실 입원료’와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적용하되,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은 다</li> </ul>	가10 격리실 입원료	격리입원 실 질환유형 별 격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li> <li>- ‘격리실 입원료’와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적용하되,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은 다</li> </ul>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현 행			개 정			비 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p>음과 같이 인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다음의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lt;생략&gt;</p> <p>나) 제2급감염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 ~ 유행성 이하선염: &lt;생략&gt;</li> <li>- 풍진 : 발진 후 7일 다만, 선천성 풍진으로 입원시 만1세까지, 선천성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시 만3세까지</li> <li>- 폴리오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lt;생략&gt;</li> </ul> <p>다) ~ 마) &lt;생략&gt;</p>			<p>음과 같이 인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다음의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lt;현행으로 유지&gt;</p> <p>나) 제2급감염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 ~ 유행성 이하선염 &lt;현행으로 유지&gt;</li> <li>- 풍진 : 발진 후 7일 다만, 선천성 풍진으로 입원시 1세까지, 선천성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시 3세까지</li> <li>- 폴리오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lt;현행과 같음&gt;</li> </ul> <p>다) ~ 마) &lt;현행과 같음&gt;</p>		

현 행			개 정			비 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b>제2장 검사료</b>			<b>제2장 검사료</b>			
누370 성선자극 호르몬, 누371 성선호르 몬- 정밀면역 검사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에 2~3종 동시 시행한 호르몬검 사의 인정기준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장애시 난소의 기능과 에스트로겐의 분 비는 수년 동안 등락을 거듭하므로 한 시점에서 에스트로겐 측정으 로 난소의 기능을 판정하기는 부 정확하며, 폐경 이행기에 혈중 난소자극호르몬(FSH)의 증가조건 이 일정하게 나타나므로 폐경 진 단에 유용한 검사는 누370나 성 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사-난포 자극호르몬 FSH 임.  따라서, 일률적으로 호르몬검사를 2종(누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 밀면역검사-난포자극호르몬 FSH , 누371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 에스트라디올 E2) 혹은 3종(누 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	누370 성선자극 호르몬, 누371 성선호르 몬- 정밀면역 검사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에 2~3종 동시 시행한 호르몬검 사의 인정기준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장애시 난소의 기능과 에스트로겐의 분 비는 수년 동안 등락을 거듭하므로 한 시점에서 에스트로겐 측정으 로 난소의 기능을 판정하기는 부 정확하며, 폐경 이행기에 혈중 난소자극호르몬(FSH)의 증가조건 이 일정하게 나타나므로 폐경 진 단에 유용한 검사는 누370나 성 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사-난포 자극호르몬 FSH 임.  따라서, 일률적으로 호르몬검사를 2종(누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 밀면역검사-난포자극호르몬 FSH , 누371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 에스트라디올 E2) 혹은 3종(누 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 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현 행			개 정			비 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검사-난포자극호르몬 FSH, 누370 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 사-황체형성호르몬 LH, 누371 성 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에스트라 디올 E2)을 산정한 경우에는 아 래와 같이 심사함.  - 아 래 - 가. <생략> 나. 첫 1회 검사로 진단이 확실 치 않은 경우 1회 추가 인 정하나, 일반적으로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이미 폐경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합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만 인정함. 다. ~마. <생략>			검사-난포자극호르몬 FSH, 누370 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 사-황체형성호르몬 LH, 누371 성 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에스트라 디올 E2)을 산정한 경우에는 아 래와 같이 심사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첫 1회 검사로 진단이 확실 치 않은 경우 1회 추가 인 정하나, 일반적으로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이미 폐 경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 으므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다. ~마. <현행과 같음>	
<b>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b>			<b>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b>			

현행			개정			비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다339 양전자 방출단 층촬영 PET	유방암에 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방 출단층촬 영 (F-18 FDG-PET) 의 적용기준	1.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우 또는 선행검사 <sup>1)</sup> 에 따른 치료 전 병 기판정 없이 시행한 경우 인정하 지 아니함. 2. 유방암 진단 후 선행검사를 통한 치료 전 병기설정 <sup>2)</sup> 에 따라 아래 와 같이 인정함.  - 아 래 - 가. stage 0, I, II는 인정하지 아니 하되, stage IIb는 아래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만 40세 이하 유방암 2) HER2(+) 3) 삼중음성 유방암 나. ~ 다. <생략>	다339 양전자 방출단 층촬영 PET	유방암에 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방 출단층촬 영 (F-18 FDG-PET) 의 적용기준	1.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우 또는 선행검사 <sup>1)</sup> 에 따른 치료 전 병 기판정 없이 시행한 경우 인정하 지 아니함. 2. 유방암 진단 후 선행검사를 통한 치료 전 병기설정 <sup>2)</sup> 에 따라 아래 와 같이 인정함.  - 아 래 - 가. stage 0, I, II는 인정하지 아니 하되, stage IIb는 아래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40세 이하 유방암 2) HER2(+) 3) 삼중음성 유방암 나. ~ 다.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 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현행			개정			비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3. ~4. <생략>  '1)~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1)~4) <현행으로 유지>	
<b>질병군</b>			<b>질병군</b>			
질병군(DRG) 진단 분류기호 부여기준		아래 진단분류기호는 다음과 같 은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1. ~8. <생략> 9. Z355(고령 초임산부의 관리) 초임산부로서 만 35세 이상인 경 우 10. Z356(어린 초임산부의 관리) 초임산부로서 만 16세 미만인 경 우 11. Z358(기타 고위험 임신의 관리) 경산으로 만 40세 이상인 경우와 만 35세 이상인 경산으로 전	질병군(DRG) 진단 분류기호 부여기준		아래 진단분류기호는 다음과 같 은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1. ~8. <현행과 같음> 9. Z355(고령 초임산부의 관리) 초임산부로서 35세 이상인 경 우 10. Z356(어린 초임산부의 관리) 초임산부로서 16세 미만인 경 우 11. Z358(기타 고위험 임신의 관리) 경산으로 40세 이상인 경우와 35세 이상인 경산으로 전 출	(제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 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현 행			개 정			비 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출산과 만 5년이상 Interval이 있는 경우 12. ~16. <생략>			산과 만 5년이상 Interval이 있는 경우 12. ~16. <현행과 같음>	